

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8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8.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측량법」, 「지적법」, 「수로업무법」이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·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,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측량법」을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1조)
- 나.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추가(안 제4조제2항)
- 다. 지명위원회 소집에 관한 규정 추가(안 제6조제2항)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3. 근거법규 :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0. 7. 26 ~ 8. 16(의견 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

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7인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“3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임기”를 “임기 및 해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잔임기간으로”를 “남은 임기로”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이 품의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

제5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사무를 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모두가”를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, “일체의”를 “모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측량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</p> <p>1. ~ 3.(생략)</p>	<p>제2조(기능)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.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지명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</p> <p>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</p> <p>3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1명 ----- 7명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2. ----- ----- 3명 ----- 3. 그 밖에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</p>	<p>제4조(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</p>

현 행	개 정 안
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 <u>으로</u> 한다.	임기는 전임위원의 <u>남은 임기로</u> 한다. <u>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<u>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u> <u>2. 위원이 품의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</u> <u>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</u>
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 ②(생략) ③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모두가</u>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----- -----사무를 <u>총괄한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 ③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-----</u> ----- -----. 제6조(회의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일</u>
제6조(회의) ①(생략) <신 설>	

현 행	개 정 약
	<p>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7조(지명의 조사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,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7조(지명의 조사) ① 제2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모든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 ~ 4. (생략)</p> <p>5. 기타 중요사항</p>	<p>제8조(회의록) ----- ----- -----.</p> <p>1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그 밖에-----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780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. 8. 25(수)

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8. 30(월)

라. 위원회 상정 : 2010. 9. 3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전병수)

가. 「측량법」, 「지적법」, 「수로업무법」이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·시행됨에 따라

나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,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「측량법」을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1조)

나.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추가(안 제4조제2항)

다. 지명위원회 소집에 관한 규정 추가(안 제6조제2항)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5. 관련법규 :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

6. 검토의견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

- 2009.12.10자로 「측량법」, 「지적법」 및 「수로업무법」이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·시행됨에 따라
-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,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이에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

- 근거법령인 「측량법」을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고
-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과
- 지명위원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일부 추가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.

다.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